

[별지 1]

##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내용 공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### 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및 그 외 투자기구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포함한다)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### 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운용 관련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⑥ 집합투자·투자일임·신탁재산의 구성내역·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

- ⑦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# I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- ① 고유재산 운용 부서
- ② 리츠재산 운용부서
- ③ 펀드재산 및 일임재산 운용부서(실제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용부문 내 부서는 제외한다)
- ④ 기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부서

### IV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#### 1. 거래주의 목록 및 지정기준

: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, 해당정보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발행인과 관련한 판매, 거래, 조사분석자료의 제공, 사적 거래 가능

- ① 공개되지 않은 딜 또는 거래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금융거래 관련 자문을 하기로 한 경우
- ③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

#### 2. 거래제한 목록 및 지정기준

: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 및 정보를 입수한 유관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거래제한

- ① 특정발행인과 관련하여 널리 일반에 알려진 거래에 회사가 투자자문, 매매·중개, 인수인, 공동주간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
- ② 기타 법상·계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

### 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## 1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

- ①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기구(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가 직·간접적으로 어떠한 거래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 관여하여 거래하는 경우
- ②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기구가 당사 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
- ③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당사의 투자기구와 그 거래 상대방 모두로부터 당사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
- ④ 당사 투자기구의 피투자자 또는 차주와 당사가 거래하는 경우
- ⑤ 당사 계열회사, 특수관계인 또는 대주주와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기구가 거래하는 경우
- ⑥ 당사의 임직원, 임직원의 배우자, 임직원의 직계존비속(이하 ‘임직원등’) 또는 임직원등이 출자한 업체(단, 상장법인은 제외한다)와 당사의 투자기구가 거래하는 경우
- ⑦ 임직원이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투자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는 경우. 단,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 등으로 투자기구가 해지·해산·청산됨에 따라 회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⑧ 기타 당사의 투자기구와 당사 간, 당사의 투자기구 간, 당사의 특정 투자기구 수익자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거래

## 2. 대응방안

- ① 담당자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의 유형, 위험의 수준 및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해당 거래의 실행 여부를 논의
- ②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, 해당 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거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, 그 외 교류방법은 제8조를 준용

## VI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- ① 임직원의 업무를 수행에 있어 위법,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
- ②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곤란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 불가
- ③ 이해상충 발생 우려종목,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및 관리
-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고,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담당조직을 설치·운영
- ⑤ 상시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및 정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함
-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
- ⑦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,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교류원칙을 정의하고 후선업무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
- ⑧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 유형별로 지정하여 구분·관리
- ⑨ 정보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,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공개 등